
인천대교 안전점검 용역입찰 평가기준

2020. 05.



1.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법령이 제정된 1995년 1월 5일로 한다. 2) 모든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점수는 항목별 평가점수와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분야 : 교량 및 터널 분야 5) 기술자 등급 및 경력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이 발급 또는 확인한 경력증명서 6)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도로교량’이나 ‘도로터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이 시행한 준공금액 3,00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단일용역에 2건 이상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건별로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의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 ②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초기점검 용역 7) ‘관리주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8)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이 발급 또는 확인한 실적증명서 ②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실적확인서 ③ ①, ②의 경우에도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9) 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본 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 ‘신용도’은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의 최저 점수로 평가한다. 12)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7호)’ [별표 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가. 참여 기술자	소 계	50																												
	1) 등 급	8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토목분야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 분야별 책임기술자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head> <tr> <th>분야</th> <th>자격 및 등급</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재료시험 분 야</td> <td>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기술사</td> <td>2.0</td> </tr> <tr> <td>토목분야 특급기술자</td> <td>1.6</td> </tr> <tr> <td>기타</td> <td>0.0</td> </tr> <tr> <td rowspan="3">자료분석 분 야</td> <td>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기술사</td> <td>2.0</td> </tr> <tr> <td>토목분야 특급기술자</td> <td>1.6</td> </tr> <tr> <td>기타</td> <td>0.0</td> </tr> </tbody> </table> - 분야별 참여기술자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head> <tr> <th>분야</th> <th>자격 및 등급</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재료시험 및 자료분석분야</td> <td>토목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td> <td>2.0</td> </tr> <tr> <td>토목분야 중급기술자</td> <td>1.2</td> </tr> <tr> <td>기타</td> <td>0.0</td> </tr> </tbody> </table> ② 사업책임기술자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기술자격 및 교육이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실격처리 한다. ③ 기술자의 기술등급 직무분야는 토목분야로 한다.	분야	자격 및 등급	점수	재료시험 분 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0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6	기타	0.0	자료분석 분 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0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6	기타	0.0	분야	자격 및 등급	점수	재료시험 및 자료분석분야	토목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2.0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1.2	기타	0.0
	분야	자격 및 등급		점수																										
	재료시험 분 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0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6																										
		기타		0.0																										
	자료분석 분 야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0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6																										
		기타		0.0																										
	분야	자격 및 등급		점수																										
재료시험 및 자료분석분야	토목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2.0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1.2																												
	기타	0.0																												
가) 사업책임기술자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4.0																													
· 재료시험분야	(2.0)																													
· 자료분석분야	(2.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4.0																													
· 재료시험분야	(2.0)																													
· 자료분석분야	(2.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2) 경 력	18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	8.0	<table border="1"> <tr> <td>경력기간</td> <td>7년 이상</td> <td>7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점수</td>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경력기간	7년 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경력기간	7년 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7.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재료시험분야	(3.5)	<table border="1"> <tr> <td>경력기간</td> <td>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2년미만</td> </tr> <tr> <td>점수</td> <td>3.5</td> <td>3.15</td> <td>2.8</td> <td>2.45</td> <td>2.1</td> </tr> </table>	경력기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3.5	3.15	2.8	2.45	2.1
	경력기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3.5	3.15	2.8	2.45	2.1									
	· 자료분석분야	(3.5)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3.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재료시험분야	(1.5)	<table border="1"> <tr> <td>경력기간</td> <td>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2년미만 1년이상</td> <td>1년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td> <td>1.35</td> <td>1.2</td> <td>1.05</td> <td>0.9</td> </tr> </table>	경력기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경력기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 자료분석분야	(1.5)														
			② 경력은 해당전문분야에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참여기간'(기간중첩 불가)으로 본다.												
			③ 해당전문분야는 공통사항에서 정하며,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분야 케이블교량(사장교, 현수교)의 정밀안전진단, 정밀 점검, 긴급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 '참여기간'의 10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참여기간'의 7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참여기간'의 4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3) 실적(건수)	14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	5.0	<table border="1"> <tr> <td>실적 (건수)</td> <td>10건이상</td> <td>10건미만 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점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실적 (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실적 (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5.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재료시험분야	(2.5)	<table border="1"> <tr> <td>실적 (건수)</td> <td>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 2건이상</td> <td>2건미만</td> </tr> <tr> <td>점수</td>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실적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실적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 자료분석분야	(2.5)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4.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재료시험분야	(2.0)	<table border="1"> <tr> <td>실적 (건수)</td> <td>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 2건이상</td> <td>2건미만 1건이상</td> <td>1건미만</td> </tr> <tr> <td>점수</td>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실적 (건수)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실적 (건수)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자료분석분야	(2.0)														
			② 최근 7년간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평가시 단일 계약건으로 2개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개수에 관계없이 용역발주 단위로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단일 계약건으로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실적을 독립적으로 인정한다. ex) ○○교 등 6개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1건으로 실적 인정 ○○교 안전점검용역 : 정밀점검 2회, 정기점검 1회 수행 → 3건으로 실적 인정												
			④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공통사항을 따르며,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분야 케이블교량(사장교, 현수교)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 '준공건수'의 10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준공건수'의 7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준공건수'의 4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4) 실적(금액)	1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	5.0	실적 (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5.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재료시험분야	(2.5)	실적 (금액)	12억이상	12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 자료분석분야	(2.5)	점수	2.5	2.25	2.0	1.75	1.5
			② 최근 7년간의 완료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공통사항을 따르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분야 케이블교량(사장교, 현수교)의 정밀안전진단, 정밀 점검, 긴급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 '준공금액'의 10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준공금액'의 7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준공금액'의 4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 계	26													
	1) 건 수	13	①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참여 건수</th> <th>8건이상</th> <th>8건미만 6건이상</th> <th>6건미만 4건이상</th> <th>4건미만 2건이상</th> <th>2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3.0</td> <td>11.5</td> <td>10.0</td> <td>8.5</td> <td>6.0</td> </tr> </tbody> </table> ② 최근 7년간의 완료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공통사항을 따르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분야 케이블교량(사장교, 현수교)의 정밀안전진단, 정밀 점검, 긴급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의 수행실적 10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 7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긴급점검의 수행실적 40%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건수) = 1건 × 0.7(참여지분율) = 0.7건 ⑤ 본 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의 평가방법은 공통사항을 따른다.	참여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13.0	11.5	10.0	8.5	6.0
	참여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13.0	11.5	10.0	8.5	6.0										
2) 금 액	13	①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실적 (금액)</th> <th>20억이상</th> <th>20억미만 15억이상</th> <th>15억미만 10억이상</th> <th>10억미만 5억이상</th> <th>5억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3.0</td> <td>11.5</td> <td>10.0</td> <td>8.5</td> <td>6.0</td> </tr> </tbody> </table> ② 최근 7년간의 완료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공통사항을 따르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분야 케이블교량(사장교, 현수교)의 정밀안전진단, 정밀 점검, 긴급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 '준공금액'의 10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준공금액'의 70% - 해당분야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긴급점검 '준공금액'의 40%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금액) = 1억 × 0.7(참여지분율) = 0.7억원 ⑤ 본 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의 평가방법은 공통사항을 따른다.	실적 (금액)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점수	13.0	11.5	10.0	8.5	6.0	
실적 (금액)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점수	13.0	11.5	10.0	8.5	6.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소 계	8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신용도 평가방법은 공통사항을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3	①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실시결과 평가결과</th> <th>시정</th> <th>부실</th> </tr> <tr> <td>감점</td> <td>건당 0.3점 감점</td> <td>건당 0.7점 감점</td> </tr> </table> ② 최근 1년간 수행한 토목분야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제 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로 산정한다.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①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대상</th> <th>용역사</th> <th>기술자</th> </tr> <tr> <td>처분기간</td> <td>입찰참가 제한기간</td> <td>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td> </tr> <tr> <td>감점</td> <td>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td> <td>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td> </tr> </table> ② 용역사 및 기술자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으로 산정한다.	대상	용역사	기술자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대상	용역사	기술자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①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회사채</th> <th>A-이상</th> <th>A-미만 BBB-이상</th> <th>BBB-미만 B-이상</th> <th>CCC+이하</th> <th rowspan="4">미제출</th> </tr> <tr> <th>기업어음</th>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r> <tr> <th>기업신용</th>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h>점수</th> <td>3.0</td> <td>2.7</td> <td>2.4</td> <td>0</td> <td>0</td> </tr> </table> ※ 붙임#1 : 신용평가등급 기준 ②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7	2.4	0	0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7	2.4	0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8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은 공통 사항을 따른다.																							
	1) 기술개발실적	2	<p>① 배점표</p> <p>- 기본점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건설신기술</th> <th>특허</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점수</td> <td>건당 1.0점</td> <td>건당 0.6점</td> </tr> </tbody> </table> <p>-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실적건수 (건)</th> <th>5이상</th> <th>4</th> <th>3</th> <th>2</th> <th>1</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0.5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body> </table> <p>② 기술개발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p> <p>③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 특허 :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p>④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p> <p>⑤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p>⑥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로 하고 특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로 한다.</p>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 투자실적	6	①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3.0%이상</th> <th>3.0%미만 2.5%이상</th> <th>2.5%미만 2.0%이상</th> <th>2.0%미만 1.5%이상</th> <th>1.5%미만</th> </tr> <tr> <th>점수</th>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6.0	5.4	4.8	4.2	3.6										
			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 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③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투자실적 증명자료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 - 투자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 매출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마. 업무 중첩도	소 계	8													
	1) 사업책임기술자	5.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3월미만</th> <th>3월이상 6월미만</th> <th>6월이상 9월미만</th> <th>9월이상 12월미만</th> <th>12월이상</th> </tr> <tr> <th>점수</th> <td>5.0</td> <td>4.4</td> <td>3.8</td> <td>3.2</td> <td>2.6</td> </tr> </table>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5.0	4.4	3.8	3.2	2.6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5.0	4.4	3.8	3.2	2.6										
· 재료시험분야		(1.5)	- 분야별책임기술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3월미만</th> <th>3월이상 6월미만</th> <th>6월이상 9월미만</th> <th>9월이상 12월미만</th> <th>12월이상</th> </tr> <tr> <th>점수</th> <td>1.5</td> <td>1.3</td> <td>1.1</td> <td>0.9</td> <td>0.7</td> </tr> </table>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1.5	1.3	1.1	0.9	0.7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1.5	1.3	1.1	0.9	0.7										
· 자료분석분야		(1.5)													
			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유사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일반사항

- 1)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참여기술자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기술자격 및 교육이수)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 할 경우 등)
- 2)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4) PQ평가에서 위의 1)의 각호에 해당하여 PQ평가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잔여업체만을 입찰의 참여자로 선정한다.
- 5)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 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7) 평가자료 제출업체는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

- 1)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PQ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 낙찰자 선정 평가방법

- 1) 사업수행능력(PQ), 기술자평가서(SOQ) 및 입찰가격의 평가는 (주)인천대교에서 한다.
- 2) 기술자평가서(SOQ)에 대한 평가는 (주)인천대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 3) 평가위원회는 5인의 내부 인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1/3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사업수행능력(PQ), 기술자평가서(SOQ)의 평가는 참여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 5) 평가항목의 누락, 판단불가,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된다.
- 6) 기술자평가서(SOQ) 평가절차
 -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② 평가항목별로 기준에 따른 절대 및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③ 종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④ 평가위원들은 참여업체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라. 평가항목 및 기준

- 1) 사업수행능력(PQ), 기술자평가서(SOQ) 평가기준
 - ① 사업수행능력(PQ), 기술자평가서(SOQ)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
- 2) 입찰가격 평가기준
 - ① 기술자평가서(SOQ) 평가가 완료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계산한다.
 - ② 당사 기준금액의 $\pm 0.5 \sim 3.5\%$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작성
 - ※ 당사 기준금액 : 1,522,508천원

- ③ 입찰가격 평가 당일 입찰업체 무작위 예가 번호(①~⑮) 중 각 사에서 1개씩 선택
- ④ 선택된 예가번호 금액의 평균가를 확정예가금액으로 산정

※ 확정예가 산정방법(예)

- 기준금액 : 1,522,50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예정 예상가	1,561,806	1,561,051	1,560,301	1,552,421	1,546,006	1,534,536	1,535,047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522,508	1,488,191	1,482,400	1,471,767	1,469,531	1,508,998	1,493,721	1,507,057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확정 예가 (②+⑥+⑧+⑬)/4
예가 번호 (금액)	② (1,561,051)	⑧ (1,534,536)	⑥ (1,522,508)	⑬ (1,508,998)	1,531,773천원

- ⑤ 입찰가격 평가방법 : $(1 - 5 \times \left| \frac{\text{당해입찰금액} - \text{확정예가}}{\text{확정예가}} \right|) \times 20$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 시 당사에서 정한 예정가격(부가세 별도)으로 적용
- ⑥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⑦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참가자는 부적격으로 처리함.

마. 낙찰자의 결정방식

- 1) 평가기준 : 기술자평가서(SOQ)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기술자평가서(SOQ) 평가 참조	80	
입찰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참조	20	

- 2) 기술자평가서(SOQ)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점수 합산 후 최상위 점수를

받은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3) 기술자평가서(SOQ)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 합산 결과 동일한 점수일 경우, 기술자평가서(SOQ)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4)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

※ 가격협상은 당사 예산범위 및 입찰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1)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0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2.7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2.4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 기술자평가서(SOQ)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제안내용은 가급적 계량화시켜 수치화된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별로 계량화가 가능함에 불구하고 수치화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작성 및 발표·답변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는 감점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감점할 수 있다.

라. 상대평가 항목 등급 배분은 다음 표와 같다.

1) 등급별 가중치

구 분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95%	90%	85%	80%

2) 참여업체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1	1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마. 수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 수행계획 및 방법(30점)” 항목을 0점 처리한다.

바. 기술자평가서의 “조직의 경험 및 역량”부분의 세부평가기준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사업수행능력(PQ)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평가한다.

사. 기술자평가서의 “수행계획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산정한다.

예시) 평가위원 5명이 2개 업체의 기술자평가서(30점)를 평가하는 경우

구 분	위원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업체 "가" 평가점수	29.9	27.6	29.6	27.6	26.6
업체 "나" 평가점수	29.6	30.0	27.7	28.8	27.0

- 참여업체별 등급 배분 : 수(100%), 우(95%)

- 업체 “가”의 평가점수 : 최고점수 29.9점 및 최저 점수 26.6점 제외
 평가점수 = $(27.6+29.6+27.6) \div 3 = 28.27$ 점

- 업체 “나”의 평가점수 : 최고점수 30.0점 및 최저 점수 27.0점 제외
 평가점수 = $(29.6+27.7+28.8) \div 3 = 28.27$ 점

아. 이미 제출된 자료와 평가서내용이 상이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차. 기타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 (70점)	1) 기술자등급·경력 (35점, 절대평가)	○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 평점 = $PQ\text{점수} \times \frac{SOQ\text{배점}(35\text{점})}{PQ\text{배점}(26\text{점})}$ - PQ점수 : 참여기술자 등급 및 참여기술자 경력에 대한 PQ평가 점수의 합																							
	2) 유사용역수행실적 (20점, 절대평가)	○ 참여기술자의 실적 및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평점 = $PQ\text{점수} \times \frac{SOQ\text{배점}(20\text{점})}{PQ\text{배점}(50\text{점})}$ - PQ점수 : 참여기술자의 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용역수행 실적에 대한 PQ평가 점수의 합																							
	3) 업무중첩도 (10점, 절대평가)	○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 - 평점 = $PQ\text{점수} \times \frac{SOQ\text{배점}(10\text{점})}{PQ\text{배점}(8\text{점})}$ - PQ점수 : 업무중첩도에 대한 PQ평가점수																							
	4) 직무적성성 (5점, 절대평가)	①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국토교통부) 시정(-0.3/건), 부실(-0.7/건)처분에 따른 감점 -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r> <td>감점</td> <td>0.3점 미만</td> <td>0.3점이상 0.7점미만</td> <td>0.7점이상 1.0점미만</td> <td>1.0점이상 2.0점미만</td> <td>2.0점 이상</td> </tr> <tr> <td>평점</td> <td>2</td> <td>1.5</td> <td>1</td> <td>0.5</td> <td>0</td> </tr> </table> ②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 및 기술자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초기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받은 기간에 따른 감점 - 평점 = $1 - \{\text{용역사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월수)} \times \text{지분율} + \text{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월수)}\} \times 0.5$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산정, 평점이 (-)인 경우 0점 처리 ③ 별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8의 '5. 별점측정기준'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술자에게 부과되는 별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점 = $\sum(\text{용역사 누계평균별점} \times \text{지분율}) + \sum(\text{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의 누계평균별점})$ -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r> <td>별점</td> <td>0.1점 미만</td> <td>0.1점이상 0.5점미만</td> <td>0.5점이상 1.0점미만</td> <td>1.0점이상 1.5점미만</td> <td>1.5점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td> <td>1.5</td> <td>1</td> <td>0.5</td> <td>0</td> </tr> </table> ※ 우리회사에서 시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우리회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진단업체(감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 직원에 대한 금품수수행위, 불법하도급 등 최근 2년간 법원, 검찰등 사법기관, 감사원, 공정위,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비리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점	0.3점 미만	0.3점이상 0.7점미만	0.7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2.0점미만	2.0점 이상	평점	2	1.5	1	0.5	0	별점	0.1점 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점수	2	1.5	1	0.5
감점	0.3점 미만	0.3점이상 0.7점미만	0.7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2.0점미만	2.0점 이상																				
평점	2	1.5	1	0.5	0																				
별점	0.1점 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점수	2	1.5	1	0.5	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방 법														
나. 수행계획 및 방법 (30점)	1) 수행계획 (20점, 상대평가)	<p>○ 업체가 제출한 수행계획을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 $\sum(\text{항목별 배점} \times \text{상대평가 등급별 가중치})$ - 미제출시는 0점으로 처리하고, 업체별 등급배분은 상위 등급부터 배분율에 의거 순서대로 배분함 - 참여업체별 등급배분 및 등급별 가중치는 공통사항에 따름 <p>○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p> <table border="1" data-bbox="691 741 1398 1413">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대상 구조물에 대한 이해 포함)</td> <td>4</td> </tr> <tr> <td>(2)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적정성</td> <td>4</td> </tr> <tr> <td>(3) 과업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td> <td>4</td> </tr> <tr> <td>(4) 품질·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td> <td>3</td> </tr> <tr> <td>(5)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td> <td>3</td> </tr> <tr> <td>(6) 해당 용역시행과 관련한 진단기술개발 및 개선사항 제안</td> <td>2</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점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대상 구조물에 대한 이해 포함)	4	(2)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적정성	4	(3) 과업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4	(4) 품질·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5)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6) 해당 용역시행과 관련한 진단기술개발 및 개선사항 제안	2
	평가항목	배점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대상 구조물에 대한 이해 포함)	4															
(2)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적정성	4															
(3) 과업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4															
(4) 품질·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5)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6) 해당 용역시행과 관련한 진단기술개발 및 개선사항 제안	2															
2) 책임기술자 발표 (10점, 상대평가)	<p>○ 업무수행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문제점에 대한 해결능력 등 자질을 상대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 $10\text{점} \times \text{상대평가 등급별 가중치}$ - 미참석시는 0점으로 처리하고, 업체수별 배분은 상위등급부터 배분율에 의거 순서대로 배분함. - 참여업체별 등급배분 및 등급별 가중치는 공통사항에 따름 															